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김천의료원 종합감사 -

2019. 6. .

### 3. 처분요구일람표

|                                           |    |
|-------------------------------------------|----|
| 1. 囹囹囹장 보직해임 부적정 (주의) .....               | 4  |
| 2. 대학동문을 ㄴㄴㄴ과 전문의로 채용 (주의) .....          | 7  |
| 3. 전문의 및 무기계약직 채용 부적정 (주의 및 통보) .....     | 10 |
| 4. 계약직(㉠㉠실 囹囹) 채용 및 전직임용 부적정 (주의) .....   | 12 |
| 5. ㉠㉠부장 채용 및 연봉제 계약 부적정 (주의) .....        | 15 |
| 5-1. ㉠㉠부장 채용 및 연봉제 계약 부적정 (징계) .....      | 17 |
| 6. 관급자재 구매계약 적격심사 부적정 (주의) .....          | 19 |
| 7. 의료장비 구매 2단계 입찰 부적정 (주의) .....          | 21 |
| 7-1. 의료장비 구매 2단계 입찰 부적정 (징계) .....        | 23 |
| 8.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주의 및 통보) .....           | 25 |
| 9.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주의 및 통보) .....             | 28 |
| 10.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불용품 무단 방출 (주의) .....      | 31 |
| 10-1.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불용품 무단 방출 (징계) .....    | 33 |
| 11. 임직원에 대한 제요금 부당 감면 (주의 및 통보) .....     | 35 |
| 12. 경조사비 원천징수 부적정 (통보) .....              | 37 |
| 13. 불공정한 징계관련 업무수행 부적정 (통보) .....         | 38 |
| 14. 해외의료봉사에 따른 의약품 기부금품 모집 부적정 (주의) ..... | 40 |
| 15. 관용차량 사적이용 및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       | 42 |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장 부당 보직해임 및 전보인사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김천의료원 「정관」 제29조에 따르면 ㉡㉡㉡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전보는 동일 직종 내에서 근무 부서를 달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직원의 보직은 능력에 따라 적재 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직책요구 자격에 부합되는 급호 및 특기에 의하여 적격자를 보직하되, 직원의 보직은 직종별,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르면 원장 밑에는 3급 내지 4급 직원 1인의 ㉡㉡㉡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 발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3급 사무직 ㉡㉡㉡장을 보직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인사규정 제40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직위해제 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직제에도 없는 보직을 부여하는 등 전보명령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관서 □□부에서는 2018. 12.경 원장으로부터 ㉠㉠㉠장 보직해임 지시를 받고 같은 해 12. 31. 위 규정과는 다르게 이사회 의 동의 절차도 생략한 채 ㉠㉠㉠장 ○○○를 ㉠㉠㉠장에서 면하고 직제에도 없는 정책감사실장으로 전보 인사명령을 한 다음 같은 날 새로운 ㉠㉠㉠장 채용 공고까지 올렸다.

한편 道 보건정책과와 사전 협의 부재 등 경상북도의 항의를 듣고서는 2019. 1. 4. 취소공고를 하고나서 뒤늦게 ㉠㉠㉠장 보직해임 동의안 처리를 위해 같은 해 1. 18. 서면이사회를 개최기로 하고 같은 해 1. 21. 서면결의를 요구 하였으나 당연직 이사 예산담당관과 보건정책과장은 서면결의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2019. 3. 15. 감사일 현재 ㉠㉠㉠장은 공식으로 되어 있고, 전 ㉠㉠㉠장 ○○○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보직해임 불이익처분을 받고 정당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장 직위를 면하고 정책감사실장 직위를 보직하였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이 아니며, 인사발령 전 면담을 통해 본인이 수락하였고 ㉠㉠㉠장 채용공고 및 인사발령 결재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자의적인 인사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의 의견대로 정책감사실을 운영하려면 우선 의료원 「정관」 제19조와 제28조에 따라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원 또한 「직제규정」 <별표 2>를 개정하여 정책감사실이 조직, 직제, 정원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 ㉠㉠㉠장 본인 동의와는 별도로 이사회 승인 없이 직제에도 없는 보직부여행위 자체가 자의적인 인사행위로 판단되어 위 관서의 의견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자의적인 인사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김천의료원장에게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장 경고” 처분하고, 감독부서에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         |                    |
|---------|--------------------|
| 제 목     | 대학동문을 ※※※과 전문의로 채용 |
| 소 관 청   | 김천의료원              |
| 관 계 부 서 | □□부                |
| 내 용     |                    |

김천의료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병원의 시업시간은 8시 30분으로 하고, 종업시간은 월~금요일은 17시로 하며 토요일은 12시 30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원장은 직종 또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사규정」 제20조의 3에 따르면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와 단계,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 전문의 ●●●과 근로자시간은 위 규정과 동일하고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동의하도록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전문의 중 2회 근무조건으로 채용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전문의 채용을 할 때에는 1주 40시간 원칙 등 복무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특정인에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6. 6.경 ※※※과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의료원 수익 증대와 지역보건 의료수준을 향상하고자 ※※※과 추가 채용 제안을 하고, 같은 해 7. 25. 전문의 공개채용공고를 한 뒤 같은 해 9. 1. 원장의 대학동문 □□□을 ※※※과 제2과장으로 채용키로 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당초 채용공고 내용에도 없는 근로조건으로 주2회 근무

(화, 목요일)를 ■■■으로부터 제안 받고서 ■■■이 2008년 <<<<병원을 마지막으로 경력이 단절된 점과 당시 ※※※과 전문의 ○○○의 과다한 업무량 해소를 사유로 위 근로조건 제안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 규정과 다르게 주2회 근무조건으로 월 급여 6,070,000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당초 채용목적인 의료원 수익증대와 ○○○의 과다 업무량 해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 과장의 재직기간 동안 외래진료 수입은 22,769원에 불과하며, 마취수술 실적 또한 354건에 불과해 당초 채용목적인 의료원 수익증대와 ○○○의 업무량 해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과 진료 실적(2016~2018)

(단위 : 천원, 건)

| 구 분 | 2016년   |       |       | 2017년   |       |       | 2018년   |      |       |
|-----|---------|-------|-------|---------|-------|-------|---------|------|-------|
|     | 외래진료 수입 | 진료 인원 | 마취 실적 | 외래진료 수입 | 진료인원  | 마취 실적 | 외래진료 수입 | 진료인원 | 마취 실적 |
| ○○○ | 118,230 | 2,137 | 1,233 | 107,701 | 1,995 | 1,094 | 33,784  | 637  | 637   |
| ■■■ | 4       | -     | 58    | 18      | -     | 296   | -       | -    | 23    |

그 결과 ■■■은 2016. 9. 1. 다른 의사직과는 다른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채용된 후 2018. 1. 31. 퇴직까지 주 2회 근무만 한 채 급여 102,910천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한편, 의사직 채용 특성상 채용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채용조건은 감사과정에서 원장의 소관이라 다수의 직원이 진술하였고, 이에 위 부당채용결정은 누가 어떠한 절차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서에 의료원 채용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시행하였다는 등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특정인에게 유리한 채용조건으로 전문의를 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김천의료원장에게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장 경고” 처분하고, 감독부서에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 상 북 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전문의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 1. 전문의 채용 부적정

김천의료원 「인사규정」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는 인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채용시험 및 전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와 제13조에 따르면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 1. ※※※과 전문의의 결원이 발생하자 인사위원회 및 내부계획 등의 수립절차 없이 2018. 1. 22.부터 인력충원 시까지 ※※※과 전문의 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였다.

더욱이 위 공고에 따라 지원한 ◎◎◎과 □□□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도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를 2018. 2. 28일 개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채용 예정인원인 1명보다 많은 2명을 합격처리하여 ※※※과 전문의를 정원(2명)보다 많이 채용(3명)하였다.

\* 각각 2018. 3. 14. 및 2018. 3. 15. 응시원서 제출

### 2.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sup>1)</sup>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조례·

훈령·규정 등을 통해 별도 정원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고용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 할 때에는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응시자격, 채용 인원, 근로조건 등을 공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운용할 때에는 과잉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직종별로 정원을 사전에 책정하고 정수 책정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행정처에서는 무기계약에 대한 별도 정원이 없는데도 2015년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 외 43명에 대하여 무기 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다.

####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인력을 채용하거나 내부위원만으로 시험위원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적정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정원을 별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2017.7.20.)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직(㉠㉠실 ㉠㉠) 채용 및 전직임용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 1. 계약직(㉠㉠실 ㉠㉠) 채용 관련

「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의료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 직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계약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실 ㉠㉠(계약직)를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응시자격에 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겠다고 공고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실 근무자(+++ : 2014. 4. 21.~2015. 4. 30.)의 사직으로 인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2015. 4. 13. 사무직(㉠㉠실 ㉠㉠, 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하여 같은 해 4. 22. 까지 공개 채용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자로 채용 공고하지 않고, “본 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제19조(채용 연령)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고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로 만 응시자격을 공고 하였다.

이후 아래 [표] 와 같이 위 ㉠㉠㉠ 등 2명이 응시하여 같은 해 4. 23. 인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같은 해 4. 28. ㉠㉠직종에 맞지 않고 경력이 전혀 없는 ㉠㉠㉠와 2015.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응시자 ㉠㉠㉠은 병원의료행정학과를 졸업하였고, 대학교에서 조교, 교육청에서 행정실무원 등 3년 1개월의 경력이 있어 ㉠㉠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짐에도 ❖❖❖의 자녀인 위 ㉠㉠㉠를 계약직

운영의 취지와 다르게 채용하였다.

[표] 사무직(㉠㉠실 ㉠㉠) 응시자 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력(학과) | 자격 및 면허 | 주요경력 |
|-----|-------------------------------------------------------------------------|----------|---------|------|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2. 전직 임용 관련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직원의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서에서는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6. 1. 1. 부터 같은 해 12. 31.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같은 해 4. 27. “근무성적이 우수 하고 성실한 직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 채용” 하기로 심의·의결하여 같은 해 5. 1.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26. 진단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6. 27.부터 7. 26.까지 병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도 같은 해 7. 23. 병가 중인 사무직 9급 ㉠㉠㉠를 “건강증진센터의 업무가 과중하다”(㉠㉠부장 ㉠㉠㉠ 진술)는 사유로 위 ㉠㉠㉠를 임상병리 업무 보조로 건강증진센터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그리고, 2018. 12. 12.(2018. 12. 24.까지) 의료원의 사업확장 및 계약 만료, 사직으로 인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보 건직, 계약직) 2명(응시자격 - ㉠㉠㉠㉠사 면허, 야간전담)을 채용하기 위하여 직원 채용공고를 하여 &&& 등 6명이 응시하였고, 응시자의 면접(2019. 1. 15)도 실시하 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2. 28. “㉠㉠㉠㉠사 2명의 사직으로 인한 인력공백 을 검증된 기존의 직원 중 ㉠㉠㉠㉠사 면허를 소지한 직원을 전직 임용하여 부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사무직 9급 ㉠㉠㉠를 보건직 8급으로 전직임용” 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채용 응시자 &&& 등 6명중 \*\*\* 등 4명은 2019. 1. 15. 면접결과 면접 관 5중 1명 이상이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과락”으로 전원 불합격처리 하

였고,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2019. 2. 13.(2. 23.까지) ○○○○○사(보건의직- 계약직) 1명(○○○○○사 면허, 야간전담) 채용하기 위하여 다시 공고하여, ### 등 6명의 응시자를 받아 같은 해 3. 8. 면접시험을 통하여 \$\$\$를 합격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 결과, 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사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2015년 채용 시 자기소개서 내용 발췌)” 는 위 ㉠㉠㉠를 위 [표] 와 같이 2015. 4. 28. ㉠㉠실 ㉠㉠(사무직, 계약직)로 채용하였고,

② 2016. 5. 1. 정규직으로 임용한 후 2018. 6. 26. 병가를 신청하자 병가중인 위 ㉠㉠㉠를 같은 해 7. 23. 건강증진 센터로 인사발령, ○○○○○사(야간 전담) 2명 결원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같은 해 직원채용공고를 하여 6명이 응시하였고, ③ 면접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2. 28. 보건의직 8급으로 전직하여 주간근무 부서인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당초 야간 전담자를 채용하려던 목적과 다르게 근무하도록 하는 등 직원의 계약제 운영의 취지를 훼손하였고, 신규채용의 균등 기회보장 의무를 박탈하는 등 특혜의 의혹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앞으로는 인사규정과 다르게 채용, 전직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부장 채용 및 연봉제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 1. ○○부장 채용에 관한 사항

김천의료원 「인사규정」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는 인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채용시험 및 전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와 제13조에 따르면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년 □□부에서 결원이 발생하자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내부계획수립 등의 절차 없이 □□부에서 임의로 2018. 4. 10.부터 인력 충원 시 까지 □□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지원자가 없자 또다시 같은 해 7. 3.부터 인력수급 시 까지 □□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에 지원하는 인원이 없자 또다시 인사위원회의 결 및 내부계획수립 절차 없이 같은 해 2018. 7. 30. □□에서 ○○부장으로 채용예정 직위를 변경하여 인력수급 시 까지 접수한다는 변경공고를 하였다.

이에 같은 해 8. 21. ☒☒☒, ☑☑☑이 ○○부장으로 지원하자 위 규정과는 다르게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를 같은 해 8. 22. 개최하여 ☒☒☒을 채용하고 차 순위자를 ☑☑☑으로 한다는 심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 개인사정으로 불과 2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같은 해 11. 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자 ㉡㉡을 3차 변경공고문에 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별도의 면접전형 절차 없이 ㉡㉡부장으로 채용하였다.

## 2. 연봉제 계약에 관한 사항

김천의료원 「연봉제규정」 제4조에 따르면 연봉제의 적용대상자는 원장, 관리부장 및 전공의를 제외한 일반의 이상 의사와 과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부장을 채용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여 20,168천 원 만큼의 급여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표] ㉡㉡부장 연봉계약 현황

(단위 : 원)

| 구 분 | 계약(재직)기간               | 연봉계약       |           | 정당한 보수액    | 과다책정액      |
|-----|------------------------|------------|-----------|------------|------------|
|     |                        | 총액         | 월지급       |            |            |
| ㉡㉡  | 2018.11.5.~2019.12.31. | 93,010,700 | 6,707,500 | 60,321,960 | 20,168,040 |

이에 위 관서에서는 ㉡㉡직의 경우 보수규정대로 임금을 책정할 경우 낮은 임금 때문에 ㉡㉡채용이 불가하며, 추후 연봉제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앞으로는 인사규정 및 연봉제규정과 다르게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징 계 요 구

제 목 ○○부장 채용 및 연봉제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징계 대상자 □□부장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위 ■■■은 2018. 3. 6. 부터 2018. 12. 31. 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력채용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김천의료원 「인사규정」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는 인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채용시험 및 전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와 제13조  
에 따르면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  
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8년 □□부에서 결원이 발생하자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내부계획수립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18. 4. 9. □□채용공고에 게재한 뒤  
⊗⊗⊗장에게 결재를 받아 같은 해 4. 10.부터 인력충원 시 까지 □□를 채용한  
다는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지원자가 없자 또다시 같은 해 7. 3.부터 인력수급 시 까지 □□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에 지원하는 인원이 없자 또다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내부계획수립 절차 없이 실무자 \*\*\*에게 ○○부장으로 채용예정직위를

변경하여 공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 없이 채용직위가 ㉠㉠에서 ㉡㉡부장으로 부당하게 변경되었고 인사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김천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1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위 사람을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관급자재 구매계약 적격심사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에 따르면 경영상태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에 따르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없는 경우 0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 ㉠㉠㉠부에서는 김천의료원 ㉠㉠㉠ 및 ㉠㉠센터 등 증축사업 냉난방기 구매 설치를 위해 2017. 3. 6. 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기로 하고 같은 해 3. 13. 개찰하여 적격심사 1순위자 (주)\*\*\*\*\*에 대해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위 냉난방기 구매 낙찰자 결정을 위해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나이스 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록확인서로 평가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 ㉠㉠㉠부에서는 적격심사 1순위자 (주)\*\*\*\*\*가 위 규정과는 다르게 정당한 신용평가등록확인서가 없어 ㉠㉠조합 ^지점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BB)를 제출하였는데도 0점 처리하지 않고 같은 해 3. 31. 이를 정당

한 것으로 인정하여 20점 만점에 19점 평점을 부여한 뒤 같은 해 4. 5. 525,559천원에 계약체결하였다.

[표] 냉난방기 구매 적격심사 현황

| 심사분야·항목      |      | 배 점     | 심사평점 | 정당평점      | 비 고            |
|--------------|------|---------|------|-----------|----------------|
| 계            |      | 100     | 85.2 | <b>66</b> | 적격통과<br>점수 85점 |
| 물품납품<br>이행능력 | 이행실적 | 20      | 20   | 20        |                |
|              | 기술능력 | 10      | 10   | 10        |                |
|              | 경영상태 | 20      | 19.2 | 0         |                |
| 입찰가격         |      | 50      | 35   | 35        |                |
| 신인도          |      | +2 ~ -2 | 1    | 1         |                |

그 결과 적격심사평점이 66점에 불과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주)\*\*\*\*\*는 부당하게 위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정당한 낙찰자는 계약에서 배제되는 등 계약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적격심사 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에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장비 구매 2단계 입찰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김천의료원 「회계규정」제166조 및 제167조의2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집행하는 각종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2단계 입찰에 따른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단계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사용부서(안과)로부터 ‘빛간섭단층촬영기’ 구매 요청을 받고 2017.(일자미상) 판매처인 (주)넵넵넵넵 및 ○○○의 제품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규격서 및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사용부서에서 (주)넵넵넵넵 제품을 희망한다

는 구입 안을 같은 해 9. 19. 의료장비구매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2018. 1. 경 기초금액 151,590천 원으로 입찰 공고를 하면서 위 업체들의 특정 규격서를 첨부한 뒤 입찰공고 이전 의료장비구매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사유로 규격(기술)입찰을 미 이행한 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당초 규격서 및 견적서를 제출받은 (주)㉠㉠㉠㉠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8. 4. 24. 마취기 구매를 위한 의료장비구매위원회 심의 시에는 아래 [표]와 같이 가격 경쟁이 될 수 없는 ㉠㉠㉠㉠과 (주)㉡㉡㉡㉡의 제품을 자의적으로 선정, 견적서를 제출받은 뒤 납품희망가를 특정한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규격(기술)입찰을 미이행한 채 ㉠㉠㉠㉠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표] 마취기 구매 의료장비구매위원회 심의 현황

| 모델명    |             |              | 비 고 |
|--------|-------------|--------------|-----|
| 제조회사   |             |              |     |
| 대리점    | ㉠㉠㉠㉠        | (주)㉡㉡㉡㉡      |     |
| 견적금액   | 88,000,000원 | 110,000,000원 |     |
| 사용부서희망 | ○           |              |     |
| 납품희망가  | 74백만원 이하    |              |     |
| 예산액    | 74백만원       |              |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관서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붙임]과 같이 입찰공고 이전 자의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최종 낙찰 받는 등 총 40건 2,570,840천원을 부적정하게 2단계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 체결하였다.

그 결과 입찰공고 이전 자의적으로 선정한 업체들의 규격서를 명시하여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하고,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다.

####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앞으로는 입찰공고 이전 자의적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징 계 요 구

제 목 의료장비 구매 2단계 입찰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실

징 계 대상자 ① ■ ■ ■

② ○ ○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위 사무직4급 ■■■는 2017. 12. 4. 부터 현재까지, 사무직6급 ○○○는 2017. 12. 4.부터 2018. 12. 31.까지 의료장비구매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2단계 입찰에 따른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단계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기준사양에 대한 결정서 및 특정모델 지정 사유서 등을

의료장비구매위원회에 제출도 하지 않은 채 사용부서로부터 ‘다목적수술대’ 등 구매 요청을 받고 특정업체 제품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규격서 및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사용부서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희망한다는 구입 안을 의료장비구매 위원회에 제출하고 부적절하게 심의를 하였다.

그 결과 입찰공고 이전에 이미 사실상 낙찰자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위 사람들은 특정회사 제품 및 가격 등이 명시된 채 의료장비구매위원회 심의가 된 것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위 사람들은 2018. 1. 빛간섭단층촬영기 구매를 위해 2단계경쟁 계약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하면서 부당하게 특정업체의 규격서를 첨부하고 난 뒤 규격(기술)입찰 자체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당초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규격서 및 견적서를 제출받은 2개 업체 중 사용부서가 희망하고 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주)ㄴㄴㄴㄴ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방법으로 위 사람들은 2017. 12.부터 현재까지 입찰공고 이전 자의적으로 선정한 업체들의 규격서를 명시하여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하고,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김천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1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위 사람들을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김천의료원 「보수규정」 제28조의 5와 <별표6-3>에 따르면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을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진료성과급 지급 기준(안)」(내부결재 2016. 8. 8.) 제3조 진료목표액의 설정에 따르면 의료원장은 당해 의사의 월평균 보수액, 최근 3년간 진료과별 의업 수입, 당해 연도 총 의업수익 목표액, 의료원 발전기여도와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료성과급 지급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직접 진료과 또는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월 진료목표액을 초과한 금액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부서의 실적성과급 지급에 대한 지급근거규정의 제정 및 해당진료의사의 계약당시 목표 수액책정의 재검토와 이를 재조정함으로써 성과급의 적정지급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최근 3년간 진료성과급 목표액을 설정하면서〔붙임〕과 같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최근 3년간 진료과별 의업수입의 50% 수준(최저 30%)에 불과한 진료성과급 목표액을 설정하고, 해마다 진료수익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도 하지 아니한 채 목표액을 초과한 금액의 10%인 5,677,838천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진료성과지급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위 규정과는 다르게 한 차례도 이사회에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또는 지급실적에 대해서 보고한 바도 없는 등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표] 최근 3년간 진료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진료성과급 지급액(a) |           |         | 의사직<br>인건비총액(b) | 비율<br>(a/b) | 진료수익<br>(입원수익+외래수익) |
|-------|--------------|-----------|---------|-----------------|-------------|---------------------|
|       | 대상자<br>(명)   | 금액        | 1인당 평균  |                 |             |                     |
| 합 계   | 66           | 5,677,838 | 257,877 | 22,007,526      |             | 93,141,881          |
| 2018년 | 24           | 2,098,861 | 87,452  | 8,045,583       | 26%         | 33,332,981          |
| 2017년 | 22           | 1,874,902 | 85,222  | 7,567,272       | 25%         | 30,657,928          |
| 2016년 | 20           | 1,704,075 | 85,203  | 6,394,671       | 27%         | 29,150,972          |

그 결과 최근 3년간 진료기관별 의업수익, 당해 의사의 월평균 보수액 등 구체적인 지급요인의 반영 없이 의사직 인건비 총액의 25% 수준의 진료성과급이 지급되고 있고, 아래 [표]와 같이 위 관서 의사직 인건비 증가와 의료이익 손실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표] 최근 3년간 의료수익/비용, 의사직 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6년대비<br>증가 비율 |
|-----------|------------|------------|------------|------------------|
| 의료수익      | 37,296,618 | 34,492,327 | 32,852,685 | 13.50%           |
| 의료비용      | 38,688,443 | 35,648,445 | 34,264,472 | 12.91%           |
| 의사직1인당인건비 | 258,495    | 236,574    | 224,157    | 15.31%           |

이에 귀 기관에서는 지방소도시 특성상 우수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진료성과급 지급을 위해 용역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 의견을 제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적절한 진료성과급 목표액을 설정, 진료성과급을 지급하시고 이에 대한 기준 및 지급실적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감사보고서 및 위 관서의 의견대로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적절한 진료성과급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붙임]

2018년 진료목표액 설정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3년간 평균액   |         |           | 목표액     | 비 고<br>(진료수입액 대비 목표액) |
|------------------------------------------------------------------------------------------------------|-----------|---------|-----------|---------|-----------------------|
|                                                                                                      | 계         | 재 료대    | 행 위료      |         |                       |
| 계                                                                                                    | 2,105,616 | 455,369 | 1,650,247 | 822,000 | 46.7%                 |
| 공공감사에 관<br>한 법률 제26조<br>및 공공기관의<br>정보공개에 관<br>한 법률 제9조<br>제1항 규정에<br>따라 이 표 감<br>사결과는 공개<br>하지 않습니다. | 104,720   | 16,315  | 88,405    | 50,000  | 74.1%                 |
|                                                                                                      | 190,913   | 42,953  | 147,960   | 50,000  | 32.4%                 |
|                                                                                                      | 202,948   | 45,476  | 157,472   | 50,000  | 29.9%                 |
|                                                                                                      | 167,038   | 33,801  | 133,237   | 50,000  | 33.9%                 |
|                                                                                                      | 101,287   | 22,074  | 79,213    | 50,000  | 54.3%                 |
|                                                                                                      | 165,584   | 42,542  | 123,042   | 65,000  | 36.2%                 |
|                                                                                                      | 229,507   | 57,988  | 171,519   | 65,000  | 44.4%                 |
|                                                                                                      | 136,339   | 28,646  | 107,693   | 65,000  | 35.7%                 |
|                                                                                                      | 46,370    | 10,369  | 36,001    | 40,000  | 145.8%                |
|                                                                                                      | 89,563    | 12,546  | 77,017    | 30,000  | 32.6%                 |
|                                                                                                      | 125,071   | 26,534  | 98,537    | 20,000  | 28.0%                 |
|                                                                                                      | 31,209    | 12,118  | 19,091    | 22,000  | 88.7%                 |
|                                                                                                      | 7,362     | 208     | 7,154     | 25,000  | 157.4%                |
|                                                                                                      | 28,134    | 4,516   | 23,618    | 20,000  | 64.0%                 |
|                                                                                                      | 196,401   | 29,892  | 166,509   | 50,000  | 28.3%                 |
|                                                                                                      | 65,464    | 9,970   | 55,494    | 30,000  | 56.2%                 |
|                                                                                                      | 59,780    | 7,252   | 52,528    | 30,000  | 49.4%                 |
|                                                                                                      | 15,429    | 1,843   | 13,586    | 60,000  | 300.9%                |
|                                                                                                      | 53,296    | 6,366   | 46,930    | 50,000  | 31.1%                 |

# 경 상 북 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위 관서 「정관」 제47조에 따르면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회계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47조의 8에 따르면 손익계산서는 병원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 하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손익 계산서 작성방법에 따르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 비용은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으로 구분하고, 의료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로 구분하고,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및 퇴직급여로 구분하며, 휴일근무수당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함.

한편, 위 관서 「보수규정」 제3조와 제12조에 따르면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하고, 매월 20일에 지급토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은 [별표7]의 근로 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지급기준(통상임금×1.50/209×시간)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지급기준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매월 적정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간호사들에게 퇴직일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19. 1. 31. 현재 총 101명의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 간호직 직원들에게 총 172,934,900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한편, 안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은 간호직 직원에 매달 보수지급일에 전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결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안동의료원 2018년(258백만원) 지급, \*\*포항의료원 2018년(250백만원) 지급

또한, 위 간호직 직원들이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금액만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결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제 위 규정대로 매월 지급되었다면 비용처리 되어야 할 인건비가 그만큼 인식되지 않아 손익계산서의 경상이익이 부풀려지는 등 경영성과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 구 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I .의료수익            | 37,296,618 | 34,492,327 | 32,852,685 |
| II .의료비용           | 38,688,443 | 35,648,445 | 34,264,472 |
| III .의료이익(손실)      | △1,391,824 | △1,156,117 | △1,411,787 |
| IV .의료외수익          | 3,020,313  | 2,593,315  | 2,728,124  |
| V .의료외비용           | 919,721    | 914,382    | 640,565    |
| VI .경상이익(손실)       | 708,767    | 522,815    | 675,772    |
| VII.법인세비용          | 147,834    | 49,838     | 291812     |
| VIII.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 670,000    | 450,000    | 1,000,000  |
| IX.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 181,545    | 43,613     |            |
| IX.당기순이익(순손실)      | 72,478     | 66,591     | △616,040   |

이에 위 관서에서는 경영이 어려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요구사항 8.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의 의사직의 진료성과급 지급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의료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할 수당 등이 손익계산서 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휴일근무수당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불용품 무단 방출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김천의료원 「회계규정」 제122조에 따르면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고, 고정자산을 불용결정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22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소재지, 취득원가,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 현황, 사유,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 산정 등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항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금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 ㉠㉠㉠부에서는 2018. 9. 4. 노무설비 교체사업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90개를 철거하고 이를 지하1층 전기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 축전지는 유효기간이 각각 3년과 5년으로 최초 설치일로부터 유효기간 내에 있었고, 2018. 11. 15. 점검 당시에도 축전상태가 양호하다고 점검하였으나 무정전 전원장치 본체를 교체하는 사유로 불용결정대상이었으나 폐기대상이 아니라 매각대상이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은 kg당 600원<sup>2)</sup> 정도로 거래되고 있었다.

2) 지정폐기물업자에게 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용과 축전기 내 납 매각 대금을 상계한 금액이 kg당 600원정도로 국제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9. 1. 위 매각대상 축전기를 불용결정 보고 및 매각 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소속 직원에게 넘겨주어 이를 처분토록 하였다.

그런 뒤 위 축전지를 건네받은 소속 직원은 이를 처리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인 구미시 소재 고물상 ㉠㉡㉢에 아무런 대가 없이 처분하였다.

그 결과 정당한 지정폐기물업자가 매각대금을 내고 처리되어야 할 폐축전지가 무자격자에 무단 반출되고, 수입조치되어야 할 매각대금은 조치되지 못하였고 구미시 소재 고물상 ㉠㉡㉢에게 2,000,000여 만 원<sup>3)</sup> 정도의 이득을 주었다.

[표]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기 현황

(단위 : 원)

| 설 치 장 소 | 규격                             | 수량   | 구매단가    | 취득금액      | 취득일자        | 비 고 |
|---------|--------------------------------|------|---------|-----------|-------------|-----|
| 전산실     | 무누액밀폐형(HSB)<br>12V 200AH       | 30EA | 325,600 | 9,768,000 | 2017. 6. 9. | -   |
| 전기실     | 무누액밀폐형(Rocket/RP)<br>12V 200AH | 60EA | 165,000 | 9,900,000 | 2016.10.26. | -   |

####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앞으로는 매각대상 불용품을 불용절차 및 매각절차 없이 무단 방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납 시세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유동적

3) KG당 600원×90EA×40kg=2,160,000원

# 경 상 북 도

## 징 계 요 구

|         |                        |
|---------|------------------------|
| 제 목     |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불용품 무단 방출 |
| 소 관 청   | 김천의료원                  |
| 관 계 부 서 | ※※※부                   |
| 징 계 대상자 | ○ ○ ○                  |
| 징 계 종 류 | 경징계                    |
| 내 용     |                        |

위 ○○○은 2015. 9. 1.부터 현재까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설물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사람은 2018. 9. 4. 노무설비 교체사업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90개를 철거하고 이를 지하1층 전기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 축전지는 유효기간이 각각 3년과 5년으로 최초 설치일로부터 유효기간 내에 있었고, 2018. 11. 15. 점점 당시에 축전상태가 양호하다고 점점 하였으나 무정전 전원장치 본체를 교체하는 사유로 불용결정대상이었으나 폐기 대상이 아니라 매각대상이었다.

위 사람 스스로도 기존 축전지 정기점검보고서에 축전지가 양호한 상태이긴 하나 위 전기공사로 인해 새로운 축전지 도입에 따라 불용결정이라 스스로 기재하고 감사과정에서도 위 축전지 90개는 불용결정대상이라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1993년 전기안전관리자로 입사 이래 시설관리분야에 26년 정도 근무경력이 있어 위 축전지 90개를 불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2016. 10.)에도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교체대상 축전지는 설계내역서에 (-)로 기재하여 폐축전지 처리비용을 충당하고도 매각수익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문답과정에서 폐축전지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지정폐기물인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9. 1. 위 매각대상 축전지를 불용결정 보고 및 매각 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소속 직원 \*\*\*에게 이를 처분토록 하였다.

그 결과 위 축전지를 건네받은 소속 직원은 이를 처리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인 구미시 소재 고물상 길동자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처분하여 수입조치되어야 할 매각대금은 조치되지 못하였고 구미시 소재 고물상 ○○○에게 2,000,000여 만 원<sup>4)</sup> 정도의 이득을 주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김천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1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위 사람을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4) KG당 600원×90EA×40KG=2,160,000원

# 경 상 북 도

## 주의요구 및 통보

|         |                    |
|---------|--------------------|
| 제 목     | 임·직원에 대한 제요금 부담 감면 |
| 소 관 청   | 김천의료원              |
| 관 계 부 서 | 원무부                |
| 내 용     |                    |

김천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원장은 임직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 또는 납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항에 따르면 감면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하기 위하여 제요금 감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경상북도김천의료원감면관리위원장이 수립한 「제요금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임·직원의 경우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특실·1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위 감면기준과는 다르게 5 ~ 6인 병실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제요금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의 50%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2016. 1.부터 2019. 2.까지 정당하게 감면된 특실·1인실 요금 등 37,222천원보다 22,804천원을 추가 감면하여 14,417천원만 수납하였다.

그 결과 소속 임직원이란 사유로 국가유공자, 사회취약계층보다 더 많은 감면을 받게 되었고, 그 금액만큼 의료원 의료수입에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직원이 다인병실에 입원할 경우 의료원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과 부서 직원들의 잦은 문병과 의료진의 관심으로 인해 일반 환자들의 시각에서는 특혜 시비와 위화감 조성 우려가 높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통분담 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근로복지 차원에서 확대간부회의시 논의하여 시행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의료수가관리규정 등과 다르게 임·직원에 과도한 제요금 감면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주의)
- ② 노사협의회 등 절차를 거쳐 임·직원에 대한 투명한 요금감면 제도를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관련자에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통 보

제 목 경조사비 원천징수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근로기준법」 제43조와 109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김천의료원과 김천의료원노동조합간의 2018년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르면 의료원은 매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불입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송부하도록 할 뿐 그 외의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과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이외에는 원천징수해서는 아니되며, 관서 운영 특성상 부득이 원천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들에게 급여공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구한 뒤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1년경(연도불분명)부터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속 임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최근 3년간 298,826천 원을 원천징수하여 경조사 대상자 63명에게 기관명의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경조사비 원천징수에 관한 임직원 동의 등을 단체협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경 상 북 도

## 통 보

제 목 불공정한 징계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김천의료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사규정」 제51조에 의하면 직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1조에 의하면 징계를 받은 자가 병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7. 11. 10.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급)이 검진검사(종양표지자 검사 등) 처방을 임의로 무료 제공하고, 건강증진센터 소속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같은 해 11. 17.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2월의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중환자실에서 2018. 10. 7. NS 500ml 정맥주사가 처방된 수액을 투입하면서 적정 약품의 투입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유통기한(2017. 5. 23.)이 지난 수액이 투입하는 등 의약품 유통기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9. 1. 14. 김천시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병원에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의약품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자에 대한 적정 문책을 위한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정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아래 [표]와 같이 3건이 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위 의료원에서는 ※※※과에서 2016. 11. 29. ❀❀❀과에서 충수절제술 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제를 주입하고 기도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상악 앞니 2개의 골절이 발생되자 보호자로부터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을 요구받고, 2018. 1. 11. 쌍방 간 합의하여 합의금 10백만 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등 병원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신분상(의사)의 사유로 징계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불공정하게 신분상의 사유로 의사에게 징계면책의 권리가 부여되는 등 특혜가 제공되었다.

[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현황

| 연번 | 진료과                                                                     | 발생일자 | 담당의사 | 합의일자 | 합의 및<br>손해배상액 | 진행여부 | 비고 |
|----|-------------------------------------------------------------------------|------|------|------|---------------|------|----|
| 1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 661,390       |      |    |
| 2  |                                                                         |      |      |      | 315,030       |      |    |
| 3  |                                                                         |      |      |      | 510,700       |      |    |
| 4  |                                                                         |      |      |      | 708,740       |      |    |
| 5  |                                                                         |      |      |      | 453,220       |      |    |
| 6  |                                                                         |      |      |      | 308,771,585   |      |    |
| 7  |                                                                         |      |      |      | 5,000,000     |      |    |
| 8  |                                                                         |      |      |      | 17,640,730    |      |    |
| 9  |                                                                         |      |      |      | 3,000,000     |      |    |
| 10 |                                                                         |      |      |      | 770,160       |      |    |
| 11 |                                                                         |      |      |      | 1,574,250     |      |    |
| 12 |                                                                         |      |      |      | 12,195,400    |      |    |
| 13 |                                                                         |      |      |      | 10,000,000    |      |    |
| 14 |                                                                         |      |      |      | 2,215,890     |      |    |
| 15 |                                                                         |      |      |      | -             |      |    |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한 의사에게 징계요구 등 불이익 처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해외 의료봉사시 의약품 기부금품 모집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와 제18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임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해외의료봉사를 목적으로 특정 제약회사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자발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해외의료봉사를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8. 5. 30. ☆☆제약(주) 등 5개사에 해외 의료봉사활동에 따른 의약품 지원을 요청 하는 공문의 발송

까지 하였다.

그런 뒤 같은 해 6. 26.과 6. 27. 위 ☆☆제약(주) 등 3개사로 부터 바로코민 등 9개 품목, 5,241,175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근 3년간 의약품 42종, 18,441,109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았다.

[표] 해외의료봉사에 따른 의약품 모집 현황

| 구 분   | 기부일               | 공 급 자                                                                   |     | 지 원 품      |     |       |            |
|-------|-------------------|-------------------------------------------------------------------------|-----|------------|-----|-------|------------|
|       |                   | 상 호                                                                     | 주 소 | 품 명        | 수 량 | 단가(원) | 금액(원)      |
| 총 계   |                   |                                                                         |     |            |     |       | 18,441,109 |
| 2016년 | 4월~7월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낙소졸정 등 25종 | 별첨  | 별첨    | 9,004,834  |
| 2017년 | 7. 19.            |                                                                         |     | 바로코민 등 7종  | 〃   | 〃     | 4,195,100  |
| 2018년 | 6. 26.~<br>6. 27. |                                                                         |     | 바로코민 등 10종 | 〃   | 〃     | 5,241,175  |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앞으로 특정 제약회사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을 지원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관용차량 개인적 사용 및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 1. 관용차량 개인적 이용

김천의료원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병원업무 외에는 사적인 일에 병원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의료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있다.

[표] 김천의료원 기관장용 차량현황

| 구 분                                                                      | 용 도 | 전담직원 | 차종 | 차량번호 | 임차일자<br>(렌트일) | 임차만료일 | 월대여료<br>(원) | 연 비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      |               |       |             |     |

그런데 위 관서 ✓✓✓ 의료원장은 2016. 7.부터 2018. 12.까지 관용차량을 퇴근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개인적 용무로 22회, 기능 9급 □□□은 2회에 걸쳐 이용하였다.

그 결과 고속도로통행요금(하이패스) \*\*회 226,100원 지출과 관용차량 운행 합산거리 \*,\*\*\*\*km운행으로 연료를(휘발유/운행기록 산출) \*\*\*리터 소모하여(김천 GS칼텍스 기준단가 적용) \*,\*\*\*,\*\*\*원을 부당하게 지출되었다.

### 2. 임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복무규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고, 출장자가 귀청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하고,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 ✓✓✓ 의료원장과 기능 9급 □□□은 2016. 7.부터 2018. 12. 까지 161회에 걸쳐 관외 출장을 하면서 사전에 출장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출장을 하였다.

더욱이 위 관서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시간외근무수당만을(시간외수당 합계금액 \*\*,\*\*\*천원) 지급하는 등 임직원 복무관리가 적정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김천의료원장은**

앞으로 관용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장명령 없이 출장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